

[별표 7] <개정 2022.7.7, 2023.12.27>

데이터전문기관의 시설·설비 및 인력·조직, 재정능력 등 요건
(제28조의3제2항 관련)

1. 인력 및 조직

가. 신용정보회사등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8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,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, 법률 전문인력을 각각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

(1)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(개인정보 보호, 데이터 가공·분석·활용, 데이터 가명·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이하 (1)에서 같다)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
나. 관련 분야(컴퓨터공학, 정보보호학, 데이터베이스공학, 통계학, 수학 등 이하 (1)에서 같다)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
다.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, 4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
라.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
마.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
(2) 법률 전문인력

가.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(개인정보 보호, 데이터 가공·분석·활용, 데이터 가명·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 또는 지원 업무 이하 (2)에서 같다)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
나.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
다.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
라.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
는 자

마. 8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
나.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이 다음을 충족할 것.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「**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.

- (1) 최근 5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나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등록되는 사실이 없을 것
- (2)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. 이 경우 "금융관계법령"은 금융관계법령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으로 본다.

2. 시설 및 설비

가. 다음의 정보처리·정보통신설비를 갖추는 것

구성	세부 요건
시스템 구성	1.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. 정보집합물 결합 시스템 나. 가명·익명처리 시스템 다.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지원 시스템 라. 보안서버 및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 2. 백업 및 복구시스템 3.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
시스템 성능	1. 대용량 데이터를 결합하고 가명·익명처리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는 것 2.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
보안체계	1. 방화벽과 침입탐지시스템을 갖추는 것 2. 인터넷 구간의 네트워크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용할 것 3.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(사용자 인증)를 갖추는 것 4.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추는 것 5. 외부침입 방지,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입·반출 통제에 대한 대책

	을 강구할 것
	6.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

나. 업무공간과 사무장비

- (1)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집합물을 안전하게 결합하고 가명·익명 처리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 및 분리된 사무공간을 갖출 것
- (2)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 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
- (3)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·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

다.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

- (1) 파업 등 불시사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(Contingency Plan)이 마련 되어 있을 것

3. 재정능력

가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기관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경영개선권고,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나.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이거나,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이내일 것. 다만, 다음 요건을 갖춘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500 이내일 것으로 한다.

- (1) 정부등(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8항에 따른 정부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자본금·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
- (2)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
- (3)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나목 본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현가능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

4. 관리체계

가. 신청인의 설립취지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

나.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